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7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송재봉ㆍ이재관ㆍ임호선

정진욱 • 이연희 • 황명선

김우영 • 이수진 • 이광희

임미애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여간 4만여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가품 판매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

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을 말한다)에서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 2.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 용의 일시적인 정지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기망(欺罔) 행위를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
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② (생 략)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u>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u>
	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
	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서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
	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
	<u>템의 구축</u>
<u><신 설></u>	2.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
	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
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가 기망(欺罔) 행위

<u>③</u>· <u>④</u> (생 략)

를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